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5043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424,522원 및 그 중 20,152,966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0. 2. 10. 접수 제13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에 관하여 2020.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20,424,522원 및 그 중 20,152,966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8. 2. 2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2.

19.(그 후 2021. 2. 17.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당해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그런데 피고 A은 2020. 1. 22.경부터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6. 4. 소외 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0,280,196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에 127,2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0,152,966원이 되었다.

2) 지연손해금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1996. 12. 30.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3) 확정손해금

위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127,230원을 회수함으로써 34원의 확정손해금(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4) 가지급금(체당금)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271,5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424,522원(=대위변제금 20,152,966원 + 확정손해금 34원 + 가지급금 271,52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152,966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3.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은 재무상황 악화 및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피고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2.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2. 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에 이전등록을 피고 B에게 각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피고 A의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각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피고 B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동 피고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수한 것은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선의로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설기계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2. 10. 및 2020. 2. 14.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0. 1. 22.부터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20. 6.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설기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설기계를 처분하게 되면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재산처분행위(이 사건 각 매매계약)는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의 선의 여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7호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20. 2. 1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8,000,000원에 매수하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소외 D조합의 채권최고액 53,300,000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은 34,218,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약 42,800,000원 정도이었던 사실, 피고 B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20. 2. 11. 피고 A에게 위 인수하기로 한 근저권부 피담보채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피고 B가 피고 A과 특별한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위 매매계약의 경위 및 그 대금액수, 피고 B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라 보이고 특별히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 B는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4호증, 을나 제4, 5호증,

을가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A은 2018. 11. 28.경 이 사건 건설기계를 소외 E캐피탈측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약 55,000,000원을 48개월 할부 납입조건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9년 말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피고 B가 할부금을 부담하여 운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2. 14. 피고 B 앞으로 그 등록명의를 이전해 준 사실(할부금의 부담 외에 따로 금전의 수수 없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위하여 그 명의변경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후 피고 B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위 E캐피탈측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회수하여 2020. 2. 27.경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F(용인센터)라는 업체가 최고가 19,500,000원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 피고 B가 2020. 3. 17.경 E캐피탈측에 그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수한 사실(피고 B와 위 낙찰업체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위 경매입찰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에 설정되어 있던 E캐피탈측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은 약 34,000,000원 정도이었고,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시세는 약 35,000,000원에서 41,000,000원 정도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처분행위(명의이전행위)의 경위, 그 후 이루어진 피고 B의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건설기계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거기에 채권자를 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선의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건설기계를 선의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건물의 표시 양주시
[도로명주소] 양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2층 호 52.0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양주시 대 40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09분의 36.675

[별지 목록]

건설기계의 표시

등록번호 :

건설기계명 : 덤프트럭

형식 : P124CB8X4NZ420H

규격 : 25.5톤

차대번호 :

연식 : 2007

사용본거지 : 경기도 의정부시

